##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종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67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6.

발 의 자: 백종헌·허은아·황보승희

조명희 · 정운천 · 최연숙

유경준 · 강대식 · 하태경

서정숙 · 정동만 · 추경호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, 자격시험은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.

그런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징수한수 로를 그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시험 운영기관에서 자격시험 업무를 운영하는 데 재정정·행정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.

이에 시험운영기관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업무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,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을 위해 징수한 수수료를 직접 필 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격시험 업무의 원 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4 및 제32조).

##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4제3항 중 "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업무를"을 "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시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"로 한다.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2조(수수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수탁기관"이라 한다)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.

- 1. 이 법에 따른 등록 · 신고를 하거나 심사 · 인증을 받으려는 자
- 2. 이 법에 따른 등록·신고사항 또는 심사·인증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는 자
- 3. 제3조의4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발급을 신 청하려는 자
- ② 수탁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그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

사 자격시험) ① • ② (생 략)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자격시험 업무를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운영기 관으로 지정하여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32조(수수료) 이 법에 따른 등 <u>록·신고·심사</u> 또는 인증을 증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등록 · 신고 · 심사 또는 인증받 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.

제3조의4(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 제3조의4(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 사 자격시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> 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시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<u>제32조(수수료</u>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 받거나, 자격시험 응시와 자격 리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 은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수탁 기관"이라 한다)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 탁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.

- 1. 이 법에 따른 등록·신고를 하거나 심사·인증을 받으려 는 자
- 2. 이 법에 따른 등록・신고사

   항 또는 심사・인증받은 사항

   을 변경하려는 자
- 3. 제3조의4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발급 을 신청하려는 자
- ② 수탁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기준을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탁 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그 수탁기관의 수입 으로 한다.